

■ 신청 일정 및 장소

- 일시 : 2026. 07. 22(수)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67-9 당사 건본주택

■ 대출담당자

대출 담당	취급점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첨단2산단지점	대리 정지영	062-573-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71	

■ 서류관련 유의사항

- 구비서류는 (2026. 07. 08(수) 포함)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번호 다 보이게 발급바랍니다.
- 구비 서류 1가지라도 당일 미지참시 **대출 접수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서류 접수 및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하며, 계약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서류 발급 시 본인 및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발급 바랍니다. *** 마스크(**)없이 발급**
- **대출한도 확인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 방문해주시거나, 방문 불가** 시 배우자의 위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 각각 발급 > 주민번호 정정 사항 포함 발급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① 분양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납부 영수증(임대차계약기간 표기 필수)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③ 주민등록등본 1통
 - * 배우자와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 1통 포함
- ④ 주민등록초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각 1통(분리 세대인 경우 등본 상 자녀 포함 되어 있을 시 자녀 초본 발급 필수)
 - * 미성년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항 포함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T.1577-1000) → '계약자 본인' 명의 현재 기준 발급 요망.
- ⑦ 부부합산 1주택 보유중인 경우 보유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1통 추가로 필요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자인 경우 대출 불가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 합산 2주택 이상 보유 시 대출 불가
 -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 합산 1주택 보유 시 1회차~5회차 까지만 신청 가능 / 6회차 대출 신청 불가
 - 보유 주택이 '20.07.10 이후' 취득한 규제대상 아파트인 경우 대출 불가
 - 규제대상 아파트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말함.
 - 보증신청인을 포함한 **보증서 발급 세대당 1건**을 초과할 경우 보증서 발급제한으로 대출 불가

2. 소득증빙서류(아래 해당사항 택1) *서류의 기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현재기준으로 발급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피부양자 포함)
① 재직증명서(필수, 회사 직인날인 필수)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 최근 2개년 소득금액증명원(24년, 25년) (세무서 · 국세청홈텍스 발급) - 최근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4년, 25년 / 회사 직인날인 필수) - 2026년 입사한 경우 : 입사 이후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회사 직인날인 필수)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① 사업자등록증(필수)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 최근 2개년 소득금액증명원(23, 24년, 25년) (세무서 · 국세청홈텍스 발급) - 최근 2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로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소득자 서류로 제출.	① 무소득사실증명(필수) (세무서 · 국세청홈텍스 발급) ② 아래 서류 중 한 가지 선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최근 1년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액 미표기시 연금수령 통장 사본 추가) - 최근 1년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현재 미납금액이 없어야 함) - 공단 발급 최근 1년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신청일 현재 미납금액이 없어야 함) - 최근 년도 연말정산용 카드 사용금액확인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3. 기타(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 대상일 경우 추가 구비서류 준비)

■ 보증료 할인 : 계약자의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적용

(1) 사회배려계층 : 보증신청인이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각호의 1에 해당 시 보증료 할인하되,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내에서 중복할인 불가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40% 할인)	1.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 세무서발급 '사실증명원' 제출 요함) 2. 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3.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 4. 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에 한함. 5. 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경우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8.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9.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피보증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사자 증서, 의상자증으로 의사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
사회배려계층 할인대상 (60% 할인)	6. 피보증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10. 보증신청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 등의 동거인 없이 단독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2) 모범납세자 : 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료의 10%를 할인

(3) 전자계약 : 보증신청인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료의 3%를 할인

■ 보증료 할인 적용 : 보증료율을 적용한 보증료에 (1),(2),(3)의 보증료 할인율을 순차 적용

■ 보증료 할인 적용시 확인서류

대 상	확인서류
저소득가구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 - 소득이 없으신 분의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세무서 발급)" 준비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 -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 서류 추가 징구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군수·구청장이 발급)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간인정소득 산출을 위한 세부기준 준용 - 소득이 없으신 분의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세무서발급)"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유공자	- 국가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만 가능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의사상자	○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 의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분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